

공동기기센터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공동기기센터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공동기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공동기기”란 본교에 구축되어 본교 또는 외부 연구자·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기기의 활용방안 수립
2. 공동기기의 대내외 활용지원 및 사용료의 징수·관리
3.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관리
4. 본교 일반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자산관리
5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제4조(소관) 센터는 연구협력처의 소관으로 한다.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센터의 운영 효율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처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조직) 센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둔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센터장, 연구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, 공과대학장, 항공·경영대학장, 사무처장

2. 임명직 위원: 전임교원 2명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담당 직원 2명 내외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

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협력팀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재정은 본교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, 센터 공동기기 사용료, 공동기기 관련 외부 사업비와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처리는 본교의 재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기타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